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인촌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, 국가유산청장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·연구·발굴·복원·보존 및 역사문화환경 정비·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4. ~ 9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었음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사업 비용 지원)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비용을 지원 받지 않는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·연구·발굴·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
2.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정비·육성을 위한 기반 사업에 필요한 비용

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의2(사업 비용 지원) ① 국</u> <u>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</u> <u>에 따라 정비사업 중 다른 법령</u> <u>에 따라 사업 비용을 지원 받지</u> <u>않는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</u> <u>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</u>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</u> <u>사 · 연구 · 발굴 · 복원 및 보</u> <u>존에 필요한 비용</u> <u>2.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</u> <u>정비 · 육성을 위한 기반 사업</u> <u>에 필요한 비용</u> <u>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</u> <u>1항에 따라 실시하는 비용 지원</u> <u>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</u> <u>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</u> <u>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798